

2. 위법계약해지권

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)

	일반금융소비자	전문금융소비자
판매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합성원칙 · 적정성원칙 · 설명의무 · 불공정영업행위 · 부당권유금지 위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불공정영업행위 · 부당권유금지 위반
대상 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이고 ②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	
해지요구 기간	<p>다음 중 먼저 도달한 기간까지 해지요구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융소비자가 법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(또는 계약체결일)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성상품 :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· 대출성상품 : 판매회사가 계약에 따른 금전·재화 등을 최초 지급한 날 	
처리 효과	<p>‘위법계약해지요구서’ 접수 후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및 거절 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</p>	
신청 방법	<p>‘위법계약해지요구서’ 접수(영업점 방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도해지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없이 해당계약 해지 - 해당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상실, 판매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없음 	
해지요구 거절사유	<p>다음과 같은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을 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·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 및 누락 · 법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/합리적인 근거자료 부재 · 계약 후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 위반 주장 · 판매업자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기조치 · 기타 	
시행일	<p>21.3.25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</p>	